



삼일회계법인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March 16, 2026



Table of contents

01 Tax news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국세청,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안내• 국세청,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제도 도입 안내• 2025년 지방세 수입 120조 9천억 원, 전년 대비 6조 8천억 원 증가• 국세청, 중소기업 미래성장 세정지원 발표	
02 최신 주요 개정 동향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0호, 2026. 2.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9호, 2026. 2. 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8호, 2026. 2.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2호, 2026. 2. 27.)• 국제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2. 27.)• 교육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7호, 2026. 2. 2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5호, 2026. 2. 2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45호, 2026. 2. 27.)•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40호, 2026. 2. 2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41호, 2026. 2. 27.)•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6호, 2026. 2. 27.)	
03 최신 예규·판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 비과세특례와 사업소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의 동시 적용 여부•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시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비 요건 적용방법• 금융투자업 영위 법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출액 요건 판정방법	

01

Tax news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가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법인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 의무 및 절차 삭제 법인세 추계과세 시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 명확화 (추계과세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간 차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 예외 거래 범위 조정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백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조특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 (공제대상·공제대상 제작비용·공제대상 제외 제작비용) 지방이전 감면한도 적용을 위한 사업용자산의 범위 규정 (이전공장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조정 (주포제2농공단지 삭제·남후농공단지 및 영덕제2농공단지 추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추가·정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등) 대학의 수익용자산 대체취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펀드 범위 규정 유통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 계산방법 규정 및 감면 신청 서류 추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세부규정 마련 (원칙: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예외: 연결재무제표 미작성시 별도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매매거래 조성에 따른 법령 정비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안전시설 범위 확대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등 추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신규 3개·확대 2개 추가, 신성장 사업화시설: 신규 6개 추가)
국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제출서류 추가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서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제외 지역 확대 (같은 지역 범위 확대: 유럽연합(EU)과 영국)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당기법인세 배분방법·대상조세 중 이연법인세 배분방법 신설 등)

국세청,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안내

국세청이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한 가운데,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해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개정 내용
----	-------

법인세법

(1) 조세제도 합리화

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법법 §55)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 19%로 조정
 -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일반법인의 법인세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9%	200억 원 이하	1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
3,000억 원 초과	24%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참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각 구간별 세율 1%p 상향

② 연결법인 중소기업 성장다리 강화 (법법 §76의22)

-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중전 3년) 이내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 적용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③ 연결법인 법인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법령 §120의22)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규정 정비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에 중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액 가산 명확화

중전	개정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① + ② ①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세율 ② 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① + ② + ③ ①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세율 ② 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③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액

구분

개정 내용

법인세법

(2) 익금 및 손금 관련

① 손금불산입 대상 부담금 범위 명확화 (법법 §21)

- 손금불산입 대상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범위를 명확화
 (종전)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개정) 법령상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부담금

② 비영리법인의 유·무형자산 처분수익 과세소득 제외 (법령 §3)

-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에 대한 과세 합리화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자산의 보유기간 대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처분수입 과세 제외

$$\text{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times \frac{\text{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일수}}{\text{해당 자산을 보유한 일수}}$$

*2025년 2월 28일 이후 유·무형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③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적용 범위 (법령 §56)

- 비영리법인의 인건비 제한 규정 합리화
 - 아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의 인건비가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인건비로 보지 아니함

(종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추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 소득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2025년 2월 28일 이후 유·무형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3) 기타

①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법법 §120의4, 법령 §163의3)

-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을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여 제출의무 대상 보완

(종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
 -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작성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 포함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구분

개정 내용

법인세법

②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 (법법 §112의2, 법령 §155의2)

- 기부자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함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

조특법

(1) 조세제도 합리화

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이전지역 범위 합리화 (조특법 §63)

-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주여건 등이 여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불리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행(5년 100%, 이후 2년 50%) 유지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 (조특법 §24)

- 투자지원제도 합리화를 위해 다른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의 자산(임대사업자의 임대 포함)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③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조특법 §6)

-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 2027. 12. 31.)하고, 고용 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을 인상(고용증가율의 50% → 100%)
 -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도설정(연간 5억 원)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 고용·투자 활성화

① 통합고용세액공제 (조특법 §29의 8)

-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강화
 -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경력단절자의 범위를 기존 여성에서 남성까지 포함
 - (업종) 1년 이상 근무(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 폐지)
 - (퇴직사유) 퇴직사유에 가족돌봄 추가
- 우대대상 추가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를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추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구분

개정 내용

조특법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조특법 §24)

- 매출액 또는 자산 증가로 최초로 중소기업을 졸업(유예기간 종료)한 경우 3년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중간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

종전

□ 통합투자세액공제

-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
- (공제율)

구분(%)	기본			추가 ¹⁾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15		25	

1)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개정

□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 (좌 동)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점감구조 도입

구분(%)	기본			추가 ¹⁾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7.5 ²⁾	10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9 ³⁾	12	
국가전략기술	15	15, 20 ⁴⁾	25	

1) (좌 동)

2) (~3년)7.5%, (4년~)5%

3) (~3년)9%, (4년~)6%

4) (~3년)20%, (4년~)15%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③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조특법 §24)

-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투자액) 공제율을 기업 규모나 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10%로 상향 적용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④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특법 §24)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 적용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⑤ 바이오의약품 분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조특칙 별표1)

- 세제지원의 대상 명확화를 위해 투자대상 자산 열거
 - (바이오의약품 분야 적용대상)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간 기계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시설, 바이오의약품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증기제조기 등)

⑥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6)

- 미래 유망사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신성장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

구분	분야	기술
신규	탄소중립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 시설
확대	탄소중립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 → 바이오 합성고무 추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구분 **개정 내용**

조특법

⑦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6의 2)

-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

구분	분야	기술
신규	2차전지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
	디스플레이 (2개)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확대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 → HBM 등 추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⑧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업종 추가 (조특령 §116의 36)

-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 특구 창업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를 생산·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추가

*2025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기타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4의10)

물가 및 운임료 상승 등을 고려하여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을 인상하여 선사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국적선박의 확충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선박건조 확대, 해운업 경쟁력 강화 도모

종전	개정																											
<p>□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도</p> <p>○ (특례내용)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을 선박톤수, 운항일 이익,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p> <p>*과세표준(선박표준이익) = 2(개별선박의 순톤수 × 톤당 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p> <p>- (운항일 이익) 모든 선박에 동일한 운항일 이익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개별선박순톤수</th> <th>톤당 1운항일 이익</th> </tr> </thead> <tbody> <tr> <td>1,000톤 이하분</td> <td>14원</td> </tr> <tr> <td>1,000~10,000톤</td> <td>11원</td> </tr> <tr> <td>10,000~25,000톤</td> <td>7원</td> </tr> <tr> <td>25,000톤 초과분</td> <td>4원</td> </tr> </tbody> </table> <p>○ (적용기한) 2024. 12. 31.</p>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1,000톤 이하분	14원	1,000~10,000톤	11원	10,000~25,000톤	7원	25,000톤 초과분	4원	<p>□ 운항일 이익 조정 등 제도 재설계</p> <p>○ (좌 동)</p> <p>-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 30% 인상</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개별선박순톤수</th> <th colspan="2">톤당 1운항일 이익</th> </tr> <tr> <th>기준선박</th> <th>기준선박외</th> </tr> </thead> <tbody> <tr> <td>1,000톤 이하분</td> <td>14원</td> <td>18.2원</td> </tr> <tr> <td>1,000~10,000톤</td> <td>11원</td> <td>14.3원</td> </tr> <tr> <td>10,000~25,000톤</td> <td>7원</td> <td>9.1원</td> </tr> <tr> <td>25,000톤 초과분</td> <td>4원</td> <td>5.2원</td> </tr> </tbody> </table> <p>※ 기준선박: 해당기업 소유선박 +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 소유권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p> <p>○ 2029. 12. 31.</p>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기준선박	기준선박외	1,000톤 이하분	14원	18.2원	1,000~10,000톤	11원	14.3원	10,000~25,000톤	7원	9.1원	25,000톤 초과분	4원	5.2원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1,000톤 이하분	14원																											
1,000~10,000톤	11원																											
10,000~25,000톤	7원																											
25,000톤 초과분	4원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기준선박	기준선박외																										
1,000톤 이하분	14원	18.2원																										
1,000~10,000톤	11원	14.3원																										
10,000~25,000톤	7원	9.1원																										
25,000톤 초과분	4원	5.2원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구분

개정 내용

국제조세 분야

①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 (국조법 §6)

- 경정청구 시 제출자료 추가 및 경정기한 연장
 -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정청구 시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외 거래당사자의 사업내용·재무제표, 정상가격 조정방법 설명자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중전 2개월) 이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함
 -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자료보완 기간은 경정기한 산정 시 제외)
-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시 과세당국의 요구가능 자료 확대 (국조령 §38)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를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까지 확대
- *2025년 2월 28일 이후 자료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③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조정 (국조령 §54, §55)

-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산출방법 조정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조정소득금액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빼기 전 소득금액으로, 이전가격 규정 등을 적용하기 이전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아래 규정 적용 전의 소득금액을 말함
 - 국조령 제60의2(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 관련 규정) 추가
(중전) 국조법 제6조, 제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및 법인세법 제28조
-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④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국조법 §54)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조정
 - (조정) 면제대상 중 국내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중전 183일 이하)
 - (추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 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⑤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국조령 §144, §146, §147)

-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대상 추가
 -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 미제출 시: 자료별 5천만 원
- *2025년 2월 28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및 가중·감경기준 구체화
 - 금융정보 미제공 시: 2천만 원, 금융정보 거짓제공 시: 1계좌당 30만원(한도 2천만 원)
일부 미제공 시: 1계좌당 10만 원(한도 1천만 원)
- *2025년 2월 28일 이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과태료 완화 및 가중·감경기준 구체화
 - (미신고·과소신고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및 한도 조정
 - (과태료율) 10~20% (누진율) → 10% (단일율)
 - (한도) 20억 원 → 10억 원(미신고·과소신고 합계금액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명시)
(미소명·거짓소명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 10%
- *2025년 2월 28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청,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제도 도입 안내

국세청이 2026년부터 도입되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과세특례 제도 (이하 ‘고배당 분리과세’)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1.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로 세부담 완화

-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 사례

구분	A 고배당 기업	B 고배당 기업	C 고배당 기업	D 일반 기업	E 일반 기업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 결과
사례 1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A+B+C+D+E = 14% 분리과세 적용 결과와 종합과세 적용 결과 동일
사례 2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A+B+C = 20% 고배당 분리과세 D+E = 14% 일반금융소득 분리과세
사례 3	1,5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A+B+C = 20% 고배당 분리과세 D+E = 14%~45% 2천만 원 초과하여 종합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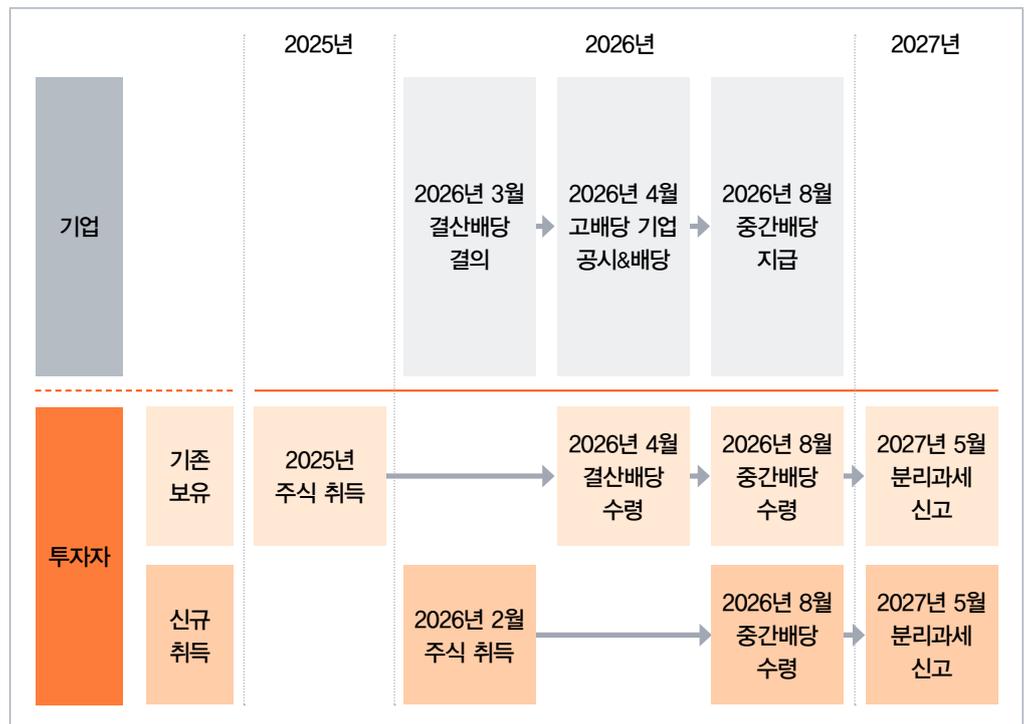
*납세자가 고배당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고배당기업에서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에서 제외

-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기업 밸류업 정보 → 고배당기업 공시내역(가칭))
- 납세자는 소득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 반드시 제출 필요)

2.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적용기간

- 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3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시 적용
- 고배당기업 주식을 2025년 이전부터 보유한 주주는 물론 2026년에 신규로 취득한 주주도 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적용 가능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 흐름도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3. 향후 국세청 추진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상자에게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대상 안내 예정
- 2026년 중 고배당 분리과세 신고를 위한 홈택스 신고화면 개발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비교 모의계산 시스템 개발
-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서 서식 확정 시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 등

2025년 지방세 수입 120조 9천억 원, 전년 대비 6조 8천억 원 증가

행안부가 발표한 2025년 연간 지방세 수입은 120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 8천억 원이 증가하여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지방세 수입 중 세목별 비중은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매매 등 부동산 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취득세가 1.6조 원 증가하고, 지방소비세는 9천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2.9조 원 증가함.

지방세 주요 세목별 수입액 현황 (단위 : 조 원)

세목	2024년 징수액	2025년 징수액 (잠정)	증감
취득세	25.9	27.5	1.6
지방소비세	25.8	26.7	0.9
지방소득세	19.9	22.8	2.9
재산세	15.1	15.8	0.7



국세청, 중소기업 미래성장 세정지원 발표

국세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유동성·경영지원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을 안내하고 있는 바, 그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원 대상

구분	대상
혁신·벤처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중기부) 미래혁신 선도기업 선정 중소기업(중기부) 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중기부, 산업부)
수출·고용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비중 50% 등 수출우수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신기술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녹색기술·뿌리기술 인증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증 중소기업
점프업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성장잠재력 우수 유망 중소기업 100개
투자확대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 2025년 수입금액 대비 투자비율 10% 이상 & 2026년 투자확대계획서(2025년 투자 대비 5~20% 이상 증가) 제출 및 이행
AI·신산업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AI지원사업 선정 중소기업 제약·바이오(복지부), 문화콘텐츠(문화부), 태양광·풍력(산업부) 지원사업 선정기업

2.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자금유동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부기한 연장)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 범위 내 승인 (납세담보 면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최대 1억 원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체납된 기업이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 승인 (경정청구 우선 처리)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 검토·처리기한 단축 (기존 2개월 → 1개월) (환급금 조기 지급) 법인세(신고 다음달 10일)·부가가치세(신고 다음달 5일)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

구분

내용

경영지원

(1)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R&D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 하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각 지방청 법인세과에서 심사)

- (신청인) 내국법인·거주자
- (신청대상) 연구·인력개발 관련 비용(지출예정 비용, 일부비용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
-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보고서 등(관련 서류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 불가)
- (심사결과) 서면으로 결과통지,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신청 가능
- (효력부여)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제외

(2)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주는 제도 (각 지방청 법인세과에서 심사)

- (신청인) 중소기업인 법인
- (신청대상) 세법에 규정된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가능 금액
- (신청기한)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언제든지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 가능)
- (결과통지) 서면으로 결과통지
- (효력부여)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제외

(3) 신고내용 확인 제외

※수입금액 신고 누락·비용 과다 계상·감면 오류 적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 전에 미리 안내하였음에도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법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

- (대상) AI 스타트업·혁신중소·스타트업·수출·일자리창출·투자확대기업
- (내용) 법인세·부가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제외(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

맞춤형 세무상담

-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 2025년부터 모든 지원대상 기업에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 제공 (접근경로)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기타 → 미래성장 세정지원 국세상담서비스 선택
- (구조조정 세무쟁점 상담지원) 기업활력법 적용 중소기업(중기부)·구조혁신 지원대상 중소기업(산업부)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세무쟁점 상담지원 제공

02

최신 주요 개정 동향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0호, 2026. 2. 27.)

개정 이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자원 및 그 소재·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추가하고, 법인의 상품 등 판매 시 판매 유형에 따라 그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개정 이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며,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청년미래적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등을 정하고,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의 범위를 정하며,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특례배당소득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추가하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9호, 2026. 2. 27.)

개정 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보육에 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개정 이유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보전 등을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증빙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은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전력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개정 이유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월 단위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정하고,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대상 세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8호, 2026. 2. 27.)

개정 이유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율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구성기업 간 내국추가세액의 배분 방법,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환기사업연도에 따른 적용면제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개정 이유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분상당액을 정하는 한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 등 중 종교단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산가액 산정방식 및 영농종사요건을 보완하며,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2호, 2026. 2. 27.)

개정 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 부동산의 수요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기준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2. 27.)

개정 이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태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가상자산 매각 대행 의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의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7호, 2026. 2. 27.)

개정 이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중인 금융상품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의 이자수의 및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5호, 2026. 2. 27.)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24. 시행)되어 담배에 새로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담배가 제조장이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의 공제·환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일을 합성니코틴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되는 날인 2026년 4월 24일로 정하고, 개별소비세의 공제·환급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폐기사실 확인 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45호, 2026. 2. 27.)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40호, 2026. 2. 27.)

개정 이유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 탁송품·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액 탁송품·우편물의 상표권 침해인정 사항 통보 등 상표권 보호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정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의 기준을 개선하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 중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물품의 회수 절차 및 대상을 정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승객예약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일부 미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41호, 2026. 2. 27.)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위한 평균세액증명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수입세액 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가 발급할 수 있도록 그 지정 절차를 정하는 한편, 개별 관세 환급의 예외로 특수공정물품이나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기로 승인을 받은 자가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는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기로 승인을 받은 자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는 제한기간을 없애는 등 규제를 개선하여 관세 환급의 간이성과 적정성의 조화를 꾀하려는 것임.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6호, 2026. 2. 27.)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미납세 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서 발급의 처리기간을 5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과실주의 품질 향상 및 제품 다양화를 위하여 과실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아라비아검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3

최신 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 비과세특례와 사업소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의 동시 적용 여부

(서면-2025-법인-3459, 2025. 11. 12.)

쟁점사항

법인세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특법에 따른 비과세·면제·준비금 손금산입·소득공제·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법법 §29 ⑧ 및 법령 §56 ⑧, 이하 '쟁점규정'), 조특법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비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조특법 §13 ①),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벤처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조특법에 의한 비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 해당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임.

회신요지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조특법에 의한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조특법 등에 따라 비과세·세액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도록 한 쟁점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동일한 소득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비과세·세액감면 등의 동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인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또는 비과세·세액감면 등의 동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으로 판단됨.

시사점

따라서, 조특법 등에 의한 비과세·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조특법 등에 따라 비과세·세액감면 등을 적용하는 방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유권해석과 유사하게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나머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법법 §18의 2 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조심2018중3033, 2019. 7. 4. 춘천지법2019구합52148, 2020. 8. 11. 서울고법(춘천)2020누904, 2022. 2. 9. 대법원 계류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과 비과세·세액감면 등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경우에도 각각의 규정을 소득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 별로 하나의 규정만을 선택·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시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비 요건 적용방법

(서면-2024-법규법안-4062, 2025. 12. 31.)

쟁점사항

조특법은 인수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조특령 §11의 4 ②)에 해당하는 피인수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피인수법인 주식의 최초취득일 현재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 주식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조특법 §12의 4, 이하 '쟁점 세액공제'), 이 때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의 하나로 피인수법인 주식의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조특법 §10 ①, 이하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조특령 §11의 4 ② 3호, 이하 '쟁점요건'),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인수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인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분할법인이 영위하던 피인수법인의 사업 관련 연구개발비를 피인수법인의 연구개발비로 간주하여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경우 쟁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회신요지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쟁점 세액공제 규정에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연구개발비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할 전 분할법인이 영위하던 피인수법인의 사업 관련 연구개발비를 피인수법인의 연구개발비로 보아 쟁점요건을 적용하도록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분할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의무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 승계되므로(대법2010다44002, 2011. 8. 25.), 분할 전에 분할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로 간주함이 타당할 수 있는 점, 쟁점요건에서 연구개발비는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연구개발비를 말하고, 증가분 방식의 R&D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조특령 §9 ⑩), 쟁점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분할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일종의 승계설 입장의 해석으로 판단됨.

시사점

참고로, 쟁점 세액공제 규정에서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 취득한 시점에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 경우에만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인수법인이 분할·설립한 사업연도에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피인수법인을 통상적인 창업기업과 동일하게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유권해석은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을 통상하도록 회신하여 이번 유권해석과 유사하게 승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서면-2024-법규법안-4012, 2025. 10. 10.), 인수법인이 분할·설립한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그 분할한 사업연도에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연구개발비와 사업영위기간을 승계한다는 승계설 입장의 유권해석에 기초하여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금융투자업 영위 법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출액 요건 판정방법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9, 2026. 2. 27.)

쟁점사항

법인세법은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법인 등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면서(법법 §60의 2 ① 1호),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법인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중 하나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의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법령 §97의 4 ② 및 §42 ② 2호, 이하 '매출액 기준비율 요건'),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법인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매출액 기준비율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이자소득·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임.

회신요지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법인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수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법 §19 ① 11호) 및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소법 §19 ① 21호), 즉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비율 요건을 적용하도록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액 기준비율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포함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한정될 뿐,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처럼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 성격의 이자소득·배당소득까지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해석으로 판단됨.

시사점

따라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등과 같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비율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소득 성격의 이자소득·배당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로 2025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법인(법법 §60의 2 ① 1호)은 일반 내국법인과 달리 2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도 9%가 아닌 19%의 세율이 적용되고(구 법법 §55 ① 2호, 2025. 12. 23. 개정 전), 또한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법인의 요건(법령 §42 ② 각 호)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은 일반 내국법인에 비해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한도금액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인정범위가 축소 적용될 뿐 아니라(법법 §25 ⑤·§27의 2 ⑤ 및 법령 §50의 2 ⑥),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중견기업에서도 제외되어 조특법상 세액공제·세액감면 등의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음(조특령 §2 ① 5호·§6의 4 ① 5호·§9 ④ 5호, 2025. 2. 28. 개정, 부칙 §2·§3).



본 최신 예규·판례 내용은 유권해석·결정례·판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조한철 Partner

han-chul.cho@pwc.com
02-3781-2577

정재훈 Partner

jae-hoon_3.jung@pwc.com
02-709-0296

김태훈 Partner

taehoon.kim@pwc.com
02-3781-2348

조영현 Director

young-hyun.jo@pwc.com
02-3781-9238

이민재 Director

min-jae_1.lee@pwc.com
02-709-8320

신예지 Senior-Manager

yeji.shin@pwc.com
02-709-0659



삼일PwC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다양한 산업과 경영환경에 대한 인사이트와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Samil PwC newsletter has been prepared for the provision of general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clients of Samil PwC, and does not include the opinion of Samil PwC on any particular accounting or tax issues.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or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Samil PwC newsletter, please consult with relevant experts.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here [unsubscribe](#).